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직업상담원 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직업상담원 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1. 최종 합격자

연번	응시번호	성명	비고
1	SW-01	박 ○ 희	최종합격

* 예비 1순위: SW-05 염○라
예비 2순위: SW-03 김○희

2. 최종합격자 안내사항

○ 최종합격자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출근**하여 아래의 서류를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바랍니다.

* 출근일 및 장소 개별 유선 안내

- 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채용 포기로 간주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급여통장 사본 1부
- 증명사진(3*4) (JPEG 형태의 사진파일 준비)
- 기본증명서(상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상세'증명서)

3. 제출서류 반환 청구 안내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반환청구기간)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반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031-259-0220)

【첨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